

■ 법률 칼럼

스폰서 회사가 필요 없는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 적정임금 신청, 광고 기간, 그리고 PERM을 통한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절차 없이 영주권을 받은 취업2순위 영주권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NIW로 알려져 있는 이 취업 2순위 영주권 신청 절차는 공학/과학 계통의 교수님/연구원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가장 많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1. 승인 요건

승인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인의 전문성/연구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여야 합니다.
- 2) 신청인의 전문성/연구 분야가 미국의 특정한 주들 (States)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전역 (50개 주 모두)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 state level이 아닌 national level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3) 신청인의 전문성/연구 분야가 미국에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 노동인증 과정 (적정임금/광고/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뛰어난 업무 능력, 연구업적 그 연구의 영향력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주의 사항

1) 연구 분야 업적/업무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들 -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석·박사 학위만 있으면 NIW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추천서만으로 업적이나 업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학위나 추천서만으로 연구 업적/업무 능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추천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들,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제출해야 하고 추천서들은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외에 연구의 결과로 받은 상이나 특허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NIW를 승인 받은 약대 교수님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교수님의 추천서 작성 시 교수님의 연구업적을 교수님의 논문을 예로 들어 설명했

고 추천인도 그 논문에 연구자로 참여했거나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지식이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또 연구 관련 분야의 특허도 함께 제출하여 신청인의 연구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2) 연구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증명 - 이 부분이 변호사의 역할이 많이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연구 분야가 미국의 국익 예를 들어 공중보건,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첨언

반드시 과학/공학/의학 분야가 아니어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고 또 신청인이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NIW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케이스를 예로 들면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의 경우 자신의 디자인 작품으로 받으신 저명한 상들, 유명한 전시회 등에 출품한 경력, 자신의 전시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뛰어난 능력을 증명했고 또 그 디자인이 상업디자인으로 연결되어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NIW 영주권을 승인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또 홍수 조절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원도 NIW를 받으신 사례가 있고 또 예술계에 계신 분들도 NIW를 승인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정임금 결정만 거의 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임금 결정 (4개월), 광고 기간 (2개월) 펄 LC 승인 (4-5개월) 등 거의 1년이 걸리는 노동인증 (LC) 기간 없이 바로 이민청원 (I-140)과 영주권신청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는 NIW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NIW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니 어감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임플란트 즉시 식립 (immediate implant placement)이라는 말은 치아를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일반적인 단계는 치아를 발치한 후 발치한 부위가 치유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발치와의 치유를 통해 임플란트를 지지할만한 뼈가 생성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플란트 식립법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다 나온 술식이 즉시 임플란트 식립술입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발치와가 치유되는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입니다. 임플란트를 바로 심게 되면 바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플란트 즉시 식립 이유가 치아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잇몸과 뼈 조직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던 잇몸과 뼈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조직의 재형성 (remodeling) 과정을 통해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치아를 뺀 부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변화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발치 후 바로 심으려면 발치한 부위에 어느 정도의 뼈가 있어서 임플란트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치와의 아래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고정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뼈의 양이 제한적인 경우는 임플란트 즉시 식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뼈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보통 발치해야 할 치아 아래에 상악동이나 신경관 등 기타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mm의 뼈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해부학적인 구조물로부터 2mm의 안전 공간을 확보해하기 때문에 최소한 5mm의 이용 가능한 뼈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연조직의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직경이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의 가용한 연조직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와 발치와의 뼈 사이 공간에 뼈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 뼈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 이식재가 잘 고정되고 보호되어 뼈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혈관과 세포 그리고 기타 조직들이 자라 들어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잇몸인데 발치 후 임플란트를 바로 심게 되면 이 연조직의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뼈이식 외에 연조직 이식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이 연조직 이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발치와의 크기가 임플란트에 비해서 너무 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금니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연조직의 양이 아주 많이 모자라는 경우는 발치와가 치유되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뼈 조직 외에 잇몸 조직도 치유된 후 임플란트를 심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치와 하반에 뼈의 양이 충분하데 발치와의 크기가 임플란트 크기보다 아주 큰 경우 일반적인 뼈 이식 술식을 병행하여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발치와의 조직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발치와에 임플란트 식립 없이 뼈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술식을 병합하여 임플란트 즉시 식립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뼈 이식을 하고 그 위에 흡수성 막으로 발치와 뼈 이식재와 임플란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임플란트가 심기는 깊이입니다.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발치와의 상부 조직은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조직들은 흡수되어 상실되는데 이 결과로 발치와 상부가 조금 내려 앉게 됩니다. 이 양을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심어야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